

제2892호
2021.12.31.

발행인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편집인 : 홍 보 전 산 과 장 김 영 혜
전화 : 3396-4951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 의 장
람	

구 보

◎ **자치법규**

[조 례]

제1591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3
제1592호 :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37
제1593호 :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1
제1594호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9
제1595호 : 서울특별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53
제1596호 :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9
제1597호 :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62
제1598호 :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65
제1599호 : 서울특별시 중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74
제1600호 :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77
제1601호 : 서울특별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80
제1602호 :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83
제1603호 :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86
제1604호 :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헬스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89
제1605호 :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94
제1606호 : 서울특별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	97
제1607호 :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99
제1608호 :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102
제1609호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6
제1610호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109
제1611호 :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23
제1612호 :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26
제1613호 :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32
제1614호 : 서울특별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5
제1615호 :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43
제1616호 :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62
제1617호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65
제1618호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171

[조 례]

제1619호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175
제1620호 :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178
제1621호 :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86

[규 칙]

제746호 :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89
제747호 :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94
제748호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97
제749호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13
제750호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	218
제751호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238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 (02)3396-4951 / FAX. (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	--	--	--	--	--	--	--	--	--	--	--	--	--	--	--	--	--	--	--



자 치 법 규

[조 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91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나.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2.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전심의 등”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전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가.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나.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다.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의원이 직무 수행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본회의 또는 해당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의원을 안전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본회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결의 대상이 된 의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회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결·의견제출 등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의장(의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말하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 2. 관리·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해야 한다.

제6조(직무 관련 조인·자문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2. 의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의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의회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의장은 의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원에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가족 채용 제한) 의원은 의회, 청구청 및 청구청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의원은 청구청 및 청구청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청구청 및 청구청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승진·전보·포상·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2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종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4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

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2. 의회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중구청 또는 중구청의 산하기관에 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중구청 또는 중구청의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0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3. 의원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 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7.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 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 관련자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

제19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의원의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 의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의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1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제20조제4항에 따른 초과사례금 신고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의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반환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2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①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

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 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 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였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이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였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의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안건심의 등 직무를 회피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24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① 의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출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1.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 2. 의회의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25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제26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8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의장과 제28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 2.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등, 제공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28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이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이 조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조례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 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의하여야 하며,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이 자문위원회 구성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율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제30조(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꺾워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③ 의장은 위원이 중도 사퇴, 질병, 장기 여행, 품위 손상, 그 밖에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31조(자문위원회 위원장)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2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제11조제2호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대한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 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33조(자문위원회 회의) ① 자문위원회 회의는 의장의 자문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2조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의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⑤ 위원장은 긴급한 자문의 필요가 있는 등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을 서면에 의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명단, 회의내용 및 자문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4조(의견청취) ①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5조(의결사항의 통지)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위원의 비밀 유지)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간사)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과 소속 직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제38조(자문료의 지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위원회 참석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운영세칙)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장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0조(행동강령의 운영) ① 의장은 의원에 대한 이 조례의 교육·상담 및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 그 밖에 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41조(교육) ① 의장은 소속 의원에 대하여 이 조례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하여 의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이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8조제3항제1호 관련)

- 1. 음식물(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3만원
- 2.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물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비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물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라.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 관련 공무원 또는 직무 관련 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 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별표 2]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제20조제1항 관련)

- 1.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 가.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 : 40만원
 - 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가목에 따른 공직자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다) : 100만원
 -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 2. 적용기준
 -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 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별지 제1호 서식] (제4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	-----

신고인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관련 직무	(1. 의안 심사, 2. 예산 심의, 3. 행정사무 감사·조사, 4. 기타) ※ 신고 원인이 되는 직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예 : 의안명 등)

직무관련자	성명	
	주소	
	연락처	
	관계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자료	
------	--

신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2호 서식] (제4조제4항 관련)

의견서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대상업무	
의견	

본인은 위 대상업무와 관련한 본회의(또는 ○○상임위원회) 의결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별지 제3호 서식] (제4조제5항 관련)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현황

접수번호		접수일
해당 의원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관련 사항	관련 직무 (1. 의안 심사, 2. 예산 심의, 3. 행정사무 감사·조사, 4. 기타) ※ 신고 원인이 되는 직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예 : 의안명 등) 직무관련자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안건심의 등 회피여부	※ 미회피 시 그 사유(소명 내용)를 기재	
본회의(상임위) 의결사항		
해당 의원 의견		
기타 참고사항		

20 년 월 일

확인점검자 (인)

■ [별지 제4호 서식] (제5조제1항 관련)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제1호)					
기간	근무처(부서)	소재지	대표자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제2호)					
기간	업체명	사업의 목적	소재지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기 타					
기 타					
작성일자 : 20 년 월 일					
					신고자 : (인)

[별지 제5호 서식] (제18조제4항 관련)

금품 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주소			
금품 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 등의 경 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 등을 제공 받게 된 경위				
금품 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 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별지 제6호 서식] (제19조제1항 관련)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청 자	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활동목적						
활동사유 및 경과						
지원받은 내역 (지원기관별)						
활동기간	. . . ~ . . . (일간)					
활동지역 (방문기관)						
참 가 자	소속 위원회	직위	성명	정당	활동경비	
					금액	부담기관
	합계		명		천원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별지 제7호 서식] (제19조제2항 관련)

국내외 활동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제 출 자	성명	정당			
	소속위원회	연락처			
활동의원	성 명	직 위	정 당	소속 위원회	
활동개요	활동목적				
	지원기관(단체)	지원받은 내역			
	활동기간	방문지역 및 기관			
주요활동내역 (일정·활동내역별)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					
제출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8호서식] (제20조제2항 관련)

외부강의 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직위 (직급)				
외부강의 등 유형	<input type="checkbox"/>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input type="checkbox"/> 회의				
활동 유형	<input type="checkbox"/> 강의, 강연		<input type="checkbox"/> 기고 <input type="checkbox"/>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input type="checkbox"/> 기타()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 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_____천원 (※ 1회 평균 대가 _____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_____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_____천원)		
		신고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유의 사항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1호 서식] (제22조 관련)

영리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 명	선거구분	지 역 구	영리행위 기간	
	소속위원회 (정당)		비례대표		
영리행위 현 황	명 칭				
	직 위				
	보 수	(택) 연 월	원 원	전화번호	
	영리행위 장소 (주소)				
기 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2호 서식] (제2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관련)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신 고 사 항					
[]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 (이율)		거래원인			
[] 물품 계약		[] 용역 계약		[] 공사 계약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거래금액		거래원인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대상		거래 금액			
거래원인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참고자료		※소명자료 첨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3호 서식] (제26조제1항 관련)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연락처	
	소속위원회 (정당)		주소	
	법인·단체 등의 경 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비고	※ 증거자료 첨부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서울중구의회 의장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4호 서식] (제27조제1항 관련)

수수 금지 금품 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소속위원회(정당)	연락처
	주소	
금품 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주소	
	법인·단체 등의 경 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 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 등의 종류 및 가액		
반환 여부		
금품 등 반환 여부 및 방법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5호 서식] (제27조제5항 본문 관련)

금품 등 인도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 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6호 서식] (제27조제5항제3호 관련)

금품 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 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7호 서식] (제27조제6항 관련)

금품 등 관리대장

일련 번호	신고 접수 번호	신고 일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신고자			제공자			인도 일/ 인도 경위	관리 부서 (관리 자)	보관 장소	처리 내용	처리 일	의장 확인
						소속	정당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성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도모하여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함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하여 규정함
-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에 관하여 규정함
-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
- 행동강령 조례 위반 시의 조치 사항을 규정함
-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92호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③ 위원장은 시민친화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회계공무원) ② 기금운용관은 동정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담당주사가 된다.

제1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기금의 결산)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③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 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③--- - 시민친화국장 ----- -----.
제13조(회계공무원) ②기금운용관은 교육체육과장 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담당주사가 된다.	제13조(회계공무원) ②----- 동정부과장 ----- -----.
제14조(기금의 결산)②항2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제14조(기금의 결산)②항2호 대차대조표 -----
제15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 까지로 하되,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존속기한) ----- 2026년 12월 31일 ----- -----.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 ----- ----- 「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체육진흥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조직개편 미정비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 존속기한 연장
- 조직개편 미정비 사항 및 관련규정 제명정비
- 오탈자 등 정비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93호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는 자가 신청을 취소하거나 제4조에 따른 관리 및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와 위약금(총 사용료의10%)을 반환 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나열된 태풍, 홍수, 화재, 감염병 등과 같은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 발생 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는 경우에는 달리 적용 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는 자의 강습 및 이용 신청 취소
 - 가. 사용예정일 5일 전 : 전액 반환
 - 나. 사용예정일 1~4일전 : 위약금 공제 후 반환
 - 다. 사용예정일 이후 : 취소일 기준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와 위약금 공제 후 반환
2. 제4조에 따른 관리 및 운영자의 강습 및 이용 취소

- 가. 사용예정일 5일 전 : 전액 반환
 - 나. 사용예정일 1~4일전 : 전액반환 및 위약금 배상
 - 다. 사용예정일 이후 : 취소일 기준 잔여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3.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는 자의 대관 취소
 - 가. 사용예정일 5일 전 : 전액 반환
 - 나. 사용예정일 1~4일전 : 위약금 공제 후 반환
 - 다. 사용예정일 이후 : 반환 불가
 4. 제4조에 따른 관리 및 운영자의 대관 취소
 - 가. 사용예정일 5일 전 : 전액 반환
 - 나. 사용예정일 4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 전액반환 및 위약금 배상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반환을 지연 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사용료에 연 100분의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나열된 태풍, 홍수, 화재, 감염병 등과 같은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 발생 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는 경우에는 달리 적용 할 수 있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50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 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
- 11.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12.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중 65세 이상의 노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제11조의2 (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는 자가 신청을 취소하거나 제4조에 따른 관리 및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와 위약금(총 사용료의10%)을 반환 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나열된 태풍, 홍수, 화재, 감염병 등과 같은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는 경우에는 달리 적용 할 수 있다.</p> <p>1.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는 자의 강습 및 이용 신청 취소</p> <p>가. 사용예정일 5일 전 : 전액 반환</p> <p>나. 사용예정일 1~4일전 : 위약금 공제 후 반환</p> <p>다. 사용예정일 이후 : 취소일 기준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와 위약금 공제 후 반환</p> <p>2. 제4조에 따른 관리 및 운영자의 강습 및 이용 취소</p> <p>가. 사용예정일 5일 전 : 전액 반환</p> <p>나. 사용예정일 1~4일전 : 전액반환 및 위약금 배상</p>

현행	개정안
	<p>다. <u>사용예정일 이후 : 취소일 기준 잔여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u></p> <p>3. <u>제11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는 자의 대관 취소</u></p> <p>가. <u>사용예정일 5일 전 : 전액 반환</u> 나. <u>사용예정일 1~4일전 : 위약금 공제 후 반환</u> 다. <u>사용예정일 이후 : 반환 불가</u></p> <p>4. <u>제4조에 따른 관리 및 운영자의 대관 취소</u></p> <p>가. <u>사용예정일 5일 전 : 전액 반환</u> 나. <u>사용예정일 4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 전액반환 및 위약금 배상</u></p> <p>② <u>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반환을 지연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사용료에 연 100분의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나열된 태풍, 홍수, 화재, 감염병 등과 같은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 발생 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는 경우에는 달리 적용 할 수 있다.</u></p>

현행	개정안
<p>제12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p> <p>①·② (생략)</p> <p>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p> <p>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p> <p><신설></p>	<p>제12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 -----</p> <p>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p> <p>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p> <p>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p>

현행	개정안
2. ~ 5. (생략)	<p>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6. 「<u>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p> <p>7. 「<u>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8. 「<u>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u>」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p> <p>9. ~ 12. (현행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p>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p>1. 제·개정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약금 최소화로 사용료를 납부하는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관리 및 운영자의 귀책 위약금제 도입하여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p>2.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료의 반환 및 위약금 규정을 조례에 신설 ○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요금 감면 규정 구체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94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 성지 역사 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 성지 역사 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서소문 성지 역사 박물관 내 시설 사용료 (제19조 관련)

연번	시 설 명		면적 (㎡)	1회 이용시간	금 액(원)	
					현 재	개 정
1	교육 강당 (지하1층)		210.23	반일	250,000	250,000
				전일	500,000	500,000
	현수막 게시대			회	-	30,000
2	기 획 전시설	지하1층 (복도)	446.67	전일	-	600,000
		지하 2층	310.63		500,000	500,000
		이동형가벽	1개·1일		-	10,000
		진입광장 현수막	설치·철거		-	500,000
			거치비/일 (6,000× 6,500)		-	20,000
TV 모니터	65인치	-	20,000			
3	소강당 (지하2층)		112.87	반일	170,000	170,000
				전일	250,000	250,000
4	콘솔레이션 홀 (지하3층)	공 연 촬 영	966.45	전일	2,500,000	2,500,000
		4면 영상			-	3,750,000
					-	1,000,000
5	하늘광장 (지하3층)	공 연	934.65	전일	2,000,000	2,000,000
		촬 영			-	3,000,000
6	하늘길		-	전일	-	1,875,000
7	대기실(지하3층)		-	전일	-	500,000

- ※ 1. 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사용시간은 전일시간(09:30~17:30), 반일시간(09:30~13:30 / 13:30~17:30)임.
- 2. 1회 사용 기준시간 미만 사용한 경우 1회 사용으로 하고, 초과시간은 1시간 미만일 경우 기본사용료의 10%,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일 경우 기본사용료의 15%,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일 경우 기본사용료의 20%를 할증.
- 3. 심야(20:30~24:00) 및 새벽(00:00~06:30) 시간은 기본사용료의 30% 할증.
- 4. 휴관일(09:30~17:30)은 기본 사용료의 30%를 할증하되, 제2호 및 제3호가 중복될 경우는 추가 할증.
- 5. 사용 성격과 기간에 따라 박물관의 내부규정으로 30%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6. 1주일 이상 사용시 휴관일은 제외하며, 위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서소문 성지 역사 박물관 내 시설 사용료(제19조 관련)					별표 1 서소문 성지 역사 박물관 내 시설 사용료(제19조 관련)						
연번	시설명	면적	1회 이용 시간	금액	연번	시설명	면적 (㎡)	1회 이용 시간	금액(원)		
									현재	개정(신설)	
1	교육 강당 (지하1층)	210.23㎡	반일 전일	250,000원 500,000원	1	교육 강당 (지하1층)	210.23	반일 전일 회	250,000 500,000 -	250,000 500,000 30,000	
2	기획 전시실 (지하2층)	310.63㎡	전일	500,000원	2	기획 전시실	전일	지하1층	446.67	-	600,000
3	소강당 (지하2층)	112.87㎡	반일 전일	170,000원 250,000원				지하2층	310.63	500,000	500,000
4	콘솔레이션홀 (지하3층)	966.45㎡	전일	2,500,000원				이동형 가벽	1개·1일	-	10,000
5	하늘광장 (지하3층)	934.65㎡	전일	2,000,000원				진입광장	설치·철거	-	500,000
								현수막	거치비 (6,000×6,500)	-	20,000
					TV 모니터	65인치	-	20,000			
					3	소강당 (지하2층)	112.87	반일 전일	170,000 250,000	170,000 250,000	
					4	콘솔레이션홀 (지하3층)	966.45	전일	공 연	2,500,000	2,500,000
									활 영	-	3,750,000
					5	하늘광장 (지하3층)	934.65	전일	4면 영상	-	1,000,000
									공 연	2,000,000	2,000,000
									활 영	-	3,000,000
					6	하늘길	-	전일	-	1,875,000	
					7	대기실(지하3층)	-	전일	-	500,000	

※ 1. 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사용시간은 전일시간(09:00~18:00), 반일시간(09:00~13:00 / 14:00~18:00 선택)임
 2. 1회 이용 기준시간 미만 사용한 경우 1회 이용으로 적용함.
 3. 토·일·공휴일 및 야간 시간(19:00~22:00) 대관시 대관료에 30%를 할증함.
 4.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 1. 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사용시간은 전일시간(09:30~17:30), 반일시간(09:30~13:30 / 13:30~17:30)임.
 2. 1회 사용 기준시간 미만 사용한 경우 1회 사용으로 하고, 초과시간은 1시간 미만일 경우 기본사용료의 10%,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일 경우 기본사용료의 15%,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일 경우 기본사용료의 20%를 할증.<신설>
 3. 심야(20:30~24:00) 및 새벽(00:00~06:30) 시간은 기본사용료의 30% 할증.<신설>
 4. 휴관일(09:30~17:30)은 기본 사용료의 30%를 할증하되, 제2호 및 제3호가 중복될 경우는 추가 할증.<신설>
 5. 사용 성격과 기간에 따라 박물관의 내부규정으로 30%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신설>
 6. 1주일 이상 사용시 휴관일은 제외하며, 위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서소문 성지 역사 박물관 내부 시설 대관 수요 증가에 따라 대관을 종류별, 사례별로 세분화하고 대관 현황에 맞는 현실적 대관으로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박물관 내 시설사용 요금표 개정 및 시설 추가
 - 대관 수요의 양적 증가, 대관 종류와 성격의 다양화에 따라 종류별, 사례별로 세분화
 - 박물관 대관 가능 시설을 추가(2곳)하여 이용자의 선택의 폭 넓히고 대관 수익 창출로 박물관 운영 부담 감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95호

서울특별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위입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 ②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 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3.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벌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 대면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한 강사에게 강사로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그밖에 위탁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교육 대상자 및 예상 참석인원
- 2. 교육 일시 및 장소
- 3. 교육 내용 및 방법
- 4. 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
- 5. 강사 선정에 관한 사항
- 6. 교육 비용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의 시기)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의 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경우에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교육의 장소) ① 교육을 실시할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제1항에 따른 장소의 대여를 요청하였을 때 구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등의 적절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구청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 명부, 교육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비치하여 3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의 피해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 3.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 등으로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 4. 그 밖에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교육실시 등의 보고) ① 수탁기관이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14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교육 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의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교육결과에 대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12조(교육 미이수자 조치) 구청장은 교육대상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p style="font-size: 24px; margin: 0;">제 호</p> <p style="font-size: 36px; font-weight: bold; margin: 0;">교육수료증</p> <p>등록번호:</p> <p>성명(대표자):</p> <p>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p> <p>상호(법인명):</p> <p>영업소 소재지:</p> <p>교육일시: . . . : ~ : (시간)</p> <p>「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노래연습장업자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24px; font-weight: bold;">서울특별시 중구청장</p>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display: inline-block; padding: 5px 15px; margin-left: 20px;">직인</div>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96호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지역문화기획, 문화예술 또는 공연예술”을 “공연예술”로 한다.

제9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3. 시민친화국장
- 4. 행정지원국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임원) ①·② (생략)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사장은 <u>지역문화기획, 문화예술 또는 공연예술</u> 분야의 전문가로 임명한다.	제7조(임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공연예술 ----- -----.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9조(이사회) ① (생략)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에 식견과 덕망이 있는 관련자로 구의회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하여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를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9조(이사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행정관리국장	3. <u>시민친화국장</u>
4. 기획재정국장	4. <u>행정지원국장</u>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우리 구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문화재단 사장의 자격조건이 포괄적으로 조례에 규정됨에 따라 비전문가가 임원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전문성을 바탕으로 문화생태계를 이해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공연예술 분야의 전문가로 자격조건을 제한하여 지역의 문화산업 발전과 공연예술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문화재단 사장의 자격조건을 “공연예술분야”의 전문가로 한정함
-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의 변경사항을 반영함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97호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제3항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금의 설치)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 까지로 하되,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까지로 하되,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인 기금운영을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98호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그 처리를 대행 받은 업체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단서규정에 의한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작업의 예외

- 가. 주간작업으로 인해 주민 보행, 차량 통행 등 주민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 나.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행사,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등 폐기물의 시급한 처리를 위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인1조 작업의 예외

- 가. 골목길, 손수레 등을 이용해 작업하는 경우
- 나. 적재중량 1.5톤 미만 차량으로 작업하는 경우
- 다.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 라.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기동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 마. 폐기물 수송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 바. 그 밖에 구청장이 폐기물의 종류, 차량의 특수성 또는 작업 환경, 상황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

제17조제2항, 제3항, 제4항을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중 “구청장은 폐기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제17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가정용 연탄재, 재활용 가능품,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제외한다.”를 “구청장은 폐기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가정용 연탄재, 재활용 가능품,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다만, 일반종량제봉투는 “생활폐기물용”과 “사업장폐기물용”으로 구분한다.”를 삭제하고, 제2항 중 “일반종량제봉투와 재사용봉투에는 종량제폐기물을 담되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용 봉투에, 제2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용 봉투에 담는다.”를 “일반종량제봉투와 재사용봉투에는 가연성 종량제폐기물을 담는다.”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배출자에게는 폐기다만,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직접 공급하게 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3]

종량제봉투 가격(제20조 제2항 관련)

1. 일반종량제 봉투

○ 생활폐기물용

용 량	판 매 가 격 (원)	
	2015.10. 1. ~ 2016.12.31.	2017. 1. 1. ~
3L	80	90
5L	120	130
10L	220	250
20L	440	490
30L	660	740
50L	1,100	1,250
75L	1,650	1,880

2. 특수종량제 봉투

용 량	판 매 가 격 (원)	
	2015.10. 1. ~ 2016.12.31.	2017. 1. 1. ~
20L	1,840	2,040
50L	4,590	5,10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11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그 처리를 대행 받은 업체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 제3호의 단서규정에 의한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주간작업의 예외</p> <p>가. 주간작업으로 인해 주민 보행, 차량 통행 등 주민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p> <p>나.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행사,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등 폐기물의 시급한 처리를 위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2. 3인1조 작업의 예외</p> <p>가. 골목길, 손수레 등을 이용해 작업하는 경우</p> <p>나. 적재중량 1.5톤 미만 차량으</p>

로 작업하는 경우
다.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라.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기동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마. 폐기물 수송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바. 그 밖에 구청장이 폐기물의 종류, 차량의 특수성 또는 작업 환경, 상황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

제17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 ① (생략)
- ② 구청장은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

제17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 ① (현행과 같음)
- ② ~ ④ <삭제>

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배출자로부터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20조(종량제 실시)

- ① 구청장은 폐기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제17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가정용 연탄재, 재활용 가능품,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제외한다.

제20조(종량제 실시)

- ① 구청장은 폐기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가정용 연탄재, 재활용 가능품,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

② (생략)

제21조(종량제봉투의 구분)

-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종량제봉투, 재사용봉투, 특수종량제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다만, 일반종량제봉투는 “생활폐기물용” 과 “사업장폐기물용” 으로 구분한다.
- ② 일반종량제봉투와 재사용봉투에는 종량제폐기물을 담되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용 봉투에, 제2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용 봉투에 담는다.

③ ~ ④ (생략)

제25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①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종량제봉투의 구분)

-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종량제봉투, 재사용봉투, 특수종량제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 ② 일반종량제봉투와 재사용봉투에는 가연성 종량제 폐기물을 담는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일반종량제봉투와 특수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 라 한다)에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배출자에게는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직접 공급하게 할 수 있다.

별표3 종량제봉투 가격(제20조 제2항 관련)

- 1. 일반종량제 봉투
 - 사업장폐기물용

용 량	판 매 가 격 (원)	
	2015.10. 1. ~ 2016.12. 31.	2017. 1. 1. ~
50 L	1,800	2,000
75 L	2,700	3,000

- ②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일반종량제봉투와 특수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 라 한다)에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3 종량제봉투 가격(제20조 제2항 관련)

- 1. 일반종량제 봉투
 - 사업장폐기물용 (삭제)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수집·운반 안전기준을 조례로 규정하여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작업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며,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관리기준』이 개정되어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자원회수시설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 및 사업장용 종량제봉투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청소행정 다변화에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마련
- 사업장용 종량제봉투 사용 및 구청의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내용 삭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99호

서울특별시 중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아 숲 교육을 통하여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아 숲 교육”이란 유아를 대상으로 숲에서 이루어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
3. “유아 숲 교육시설”이란 법 제12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유아 숲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설,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유아숲체험원 조성·운영 등) ①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숲체험원(이하 “체험원”이라 한다)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

② 체험원에는 유아숲지도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보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체험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등) ①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유아 숲 교육시설 조성 및 운영
- 2. 유아 숲 교육 전문 인력 양성
- 3. 유아 숲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4. 유아 숲 교육 연구 사업
- 5. 유아 숲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
- 유아숲체험원 조성·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함
-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
- 유아 숲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신·구조문대비표

2021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600호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행정정보의 공표)”를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으로 한다.

제12조의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심의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 중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은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공공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위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생략)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현행과 같음)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략)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인 소속공무원 4명과 위촉직인 외부전문가 3명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민친화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원여권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과장, 기획조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공공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은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공공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위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21.12.23. 시행)에 따라 변동된 내용을 우리 구 관련 자치법규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구성 개정
 - 심의회 위원수 변경 : 7명 → 5명 이상 7명 이하
 - 심의회 외부전문가 위촉 인원 변경 : 3명 → 3분의 2
- 상위법령에 부합한 용어 개정
 - 제7조의 제목 “행정정보의 공표” →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601호

서울특별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중구민들의 인권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함
-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규정
- 관련 기관의 협조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의무화
-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업무를 하는 법인에 대한 지원을 규정
-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업무 종사자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를 규정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602호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같다.

제1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노인복지기금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인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 존속기한 변경
 -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12월 31일”로 변경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603호

서울특별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같다.

제1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자활기금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인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 존속기한 변경
 -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12월 31일”로 변경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헬스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604호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헬스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 중구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의 건강 관리와 여가생활 등을 위해 서울 중구 청구로 8길 22에 조성한 어르신 헬스케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시설”란 어르신 헬스케어센터에 설치된 목욕탕 및 헬스장을 말한다.
- 2. “사용자”란 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 3. “사용료”란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4. “거동불편자”란 스스로 걸거나 몸을 움직이는 것이 불편한 자를 말한다.

제3조(사용대상자) ① 어르신 헬스케어센터의 사용자는 다음과 같다.

- 1. 서울 중구에 주민등록지를 둔 65세 이상인 자(단, 거동불편자는 보조자를 포함)
 - 2. 그 밖에 서울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시설의 사용을 허가한 사람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한 후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사용시간) ① 어르신 헬스케어센터의 시설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으며 휴관일에도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방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구청장은 시설의 사용자로부터 별표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6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1. 제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2.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 3.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4.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 5. 그 밖에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손해배상) 시설의 사용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기물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손해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어르신 헬스케어센터를 서울 중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때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수탁계약서에는 수탁자의 명칭 및 주소, 위탁기간,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1. 위탁운영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 2. 재정적인 부담능력 및 공신력
- 3. 위탁관련 분야의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예산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

정, 개정이나 폐지 시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사업계획 수립)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 전에 운영 활성화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위탁계약 기간 만료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운영위원회) ① 수탁자는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수탁자의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하고, 그 이행 결과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이 수탁자의 사무소 및 위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조사·검사하는 등의 지도·감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탁계약 해지 또는 시정 요구 등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변상책임)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그 시설을 관리·사용함에 있어 고의 또는 부주의로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안전관리)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할 때 「공중위생관리법」,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소방기본법」 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어르신 헬스케어센터 사용료(제7조 관련)

구 분	요 금	비 고
목욕탕	1,000원 / 회	
헬스장	1,000원 / 회	

※ 거동불편자의 보조자도 위 사용료와 동일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초고령사회에 대비, 노인의 위생·건강관리 등을 위한 시설인 『서울 중구 어르신헬스케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 사용대상자, 사용시간, 사용료 등
- 위탁운영, 수탁자 선정기준, 수탁자의 의무 등
- 지도감독 및 준용규정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605호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9조(기금의 존속기한) --- -----2026년 12월 31 일----- ----- ----- -----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1. 제·개정이유**

-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21.12.31.)함에 따라 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양성평등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 존속기한 연장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606호

서울특별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되는 「서울특별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서울특별시 중구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② 서울특별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2021회계연도 결산잉여금 및 이자수입은 서울특별시 중구 일반회계에 귀속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관련 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 3. 28.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 세입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기 징수 하였던 기반시설부담금의 환급금을 정산 완료(2021. 8. 23.)하여 해당 조례 및 회계 유지 필요성이 상실됨.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
- 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되는 「서울특별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서울특별시 중구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함
- 서울특별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2021회계연도 결산잉여금 및 이자수입은 서울특별시 중구 일반회계에 귀속함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2021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607호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그 밖의 부대시설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 및 경비구역 등 그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1. 경비실 및 청소원 휴게시설, 세면시설 등의 환경개선사업
- 2. 폭염, 전염병 등의 재해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지원
- 3. 그 밖에 공동주택 단지 내 노동자 인권,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청소 및 경비 구역 노동자를 위한 시설의 설치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4조의2(그 밖의 부대시설 지원)</p> <p>① 구청장은 청소 및 경비구역 등 그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1. 경비실 및 청소원 휴게시설, 세면시설 등의 환경개선사업</p> <p>2. 폭염, 전염병 등의 재해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지원</p> <p>3. 그 밖에 공동주택 단지 내 노동자 인권,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p> <p>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청소 및 경비 구역 노동자를 위한 시설의 설치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p>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공동주택 청소 및 경비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일환으로 휴게시설 등을 설치를 지원하고,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여 노동자의 휴식권, 건강권 등을 보호하고 후생복지를 향상시키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동주택단지의 해당 청소 및 경비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전염병 등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608호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들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① 구청장은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들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홍보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 제공
3. 제6조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 실시
4. 유치원생, 초등학교생, 입주자들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입주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대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위탁하여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홍보)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서울특별시 중구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여 입주자 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
-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
-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추진계획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함
-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함
-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에 대하여 규정함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609호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7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 신청”을 “60일 이내 주관부서에 이의신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이의신청 등)</p> <p>① 위원회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u>7일</u> 이내에 주관부서에 <u>이의 신청</u>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p> <p>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p>	<p>제10조(이의신청 등)</p> <p>① -----<u>60일</u> 이내 주관부서에 <u>이의신청</u>-----.</p> <p>② (현행과 같음)</p>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개정된 민원처리법의 취지에 따라 민원인의 이의신청권 보호를 위해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이의신청 조항 개정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7일에서 60일로 변경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610호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구의 정체성 및 품격을 제고하고, 사회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이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 사업"이란 공공기관 등이 디자인을 통해 공공성을 구현하는 사업과 관련된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 등"이란 구 및 공공기관 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을 말하며 기부채납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4. "사회문제해결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의 용어정의는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

성 기본 조례」 각 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의 구축·관리에 대해 구의 특성을 반영한 영역별·권역별·지역별·가로별·공공시설물별 종합적·체계적 진흥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의 품질관리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이를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과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사업 원칙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 등의 분류에 따른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가이드라인은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④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 구청장 및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참여 등) 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 미리 그 내용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게재)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 시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3장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2.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3.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4. 구에서 시행하는 총사업비 10억 미만에 해당하는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별표 1) 및 디자인 사업(별표 2)에 관한 사항
- 가.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

나. 「서울특별시 중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다.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 5.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6. 제22조제7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을 위한 사항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1. 기존 시설물의 단순 보수·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 2. 서울특별시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및 표준형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 3.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 4. 재난 상황 등에 따라 긴급하게 조성·제작·설치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양성평등 실무위원회의 의견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위원장은 생활도시친화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공간, 산업, 시각, 색채, 환경, 서비스, 사회문제해결, 범죄예방, 유니버설, 도시계획, 경관, 건축, 조경, 조명 등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생활도시친화국장 및 건축과장
-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1명
- 3.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 조교수 등)로 재직 중인 사람
- 4.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기능장·기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6.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또는 석사 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7.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피 사유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한 경우
- 4. 위원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인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

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7명 이상의 위원을 매 회의마다 지정하여 지정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담당주사를 간사로 둔다.

④ 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위원회 및 서면 심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공공디자인 심의

제18조(공공디자인 심의신청) ①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구상 완료 단계에서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의 사전 자문을 받고,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기대효과, 추진경위 및 일정 등)
- 2. 디자인 계획안(디자인 개요, 기본도면, 상세도, 위치 및 배치도, 재료계획, 조명계획, 시뮬레이션 등)

제19조(공공디자인 심의결차) ① 구청장은 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는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재심의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심의 신청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이행할 수 있으며, 서류 및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된다.

제5장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

제20조(공공디자인 사업 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
- 2. 연령, 성별, 장애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3. 구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 4.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
- 5.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쉽도록 할 것
- 6. 제6조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 7. 공공디자인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

제21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②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 또는 전문 인력이 배치된 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 ③ 공공디자인 전담부서 또는 전문 인력이 배치된 부서의 장은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사업) 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② 공공기관 등의 장 또는 주민은 구청장에게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사업 제안을 받은 경우 제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의 여부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알리기 전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⑤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업목적 및 기본방향
 - 2. 시설물 등의 디자인 방향 및 설치계획
 - 3.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 4. 기초설계안 또는 시뮬레이션 결과
 - 5. 그 밖에 사업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 ⑥ 공공디자인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공공디자인 사업자는 완료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⑦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제안을 받아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토록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⑧ 제7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는 자는 제22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사업 시행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시범·공모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이하"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시행할 때에 구청장 또는 주민 등의 제안을 받을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다.
- ③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4조(전문가의 참여)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때 전문가를 위촉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 ② 전문가의 위촉, 활동범위 등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5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26조(사업추진협의체)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구민단체·

전문가·구의회 의원·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중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8조에 따른 도시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13조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를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로 한다.

[별표 1¹⁾]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대상 시설물

다음 각 호 대상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등이 공공성과 기능성,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검토

1. 사회기반시설

분류	시설물의 종류
도로시설물 (도로 부속시설물 포함)	가. 교량(철교를 포함한다) 나. 고가차도(철도위에 설치한 고가차도를 포함한다) 다. 입체교차 라. 자전거도로 마. 보도포장, 보도·점자블록 바. 보도육교, 지하보도(승강기를 포함한다) 사. 20M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석축 및 옹벽(터널전면부 옹벽시설 포함) 아. 방음벽 자. 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낙석방지망 등 차. 가로등 카. 트렌치, 맨홀 타. 제설시설
도시철도시설	가. 지하철출입구(캐노피를 포함한다. 단, 교통약자 등을 위해 기존 출입구를 개량(개선)하는 경우와 표준형 캐노피 및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나. 지하철안내표지판 다. 환기구(흡·배기구) 라. 지상노출 엘리베이터
하천시설물	가. 육갑문 나. 하천 제외지 구조물(옹벽, 석축 등)
전원설비	가. 송전탑, 변압탑
자전거 이용시설	가. 자전거보관대 등

2. 그 밖의 시설물

분류	시설물의 종류
전기통신설비	분전함, 공중전화부스, 무선전화기국, 발신전용휴대전화 기지국, 우체통, 통신안테나, CCTV 지주, 전신주, 신호등주
정보통신망	가. 종합유선 방송 나. 교통량감지기
문화관광시설	가. 관광안내소 나. 관광안내도 다. 시티투어 안내표지판, 문화재 설명 표지판, 기념 표석
가로녹지시설	가. 가로수 보호덮개 나. 가로 녹지대 다. 가로 화분대 라. 분수대 마. 벽천
환경관리시설	가. 휴지통 나. 환경미화원 대기소 다. 공중화장실 라. 대기오염 전광판
교통관련시설	가. 보행자 안내표지 나. 택시·마을버스· 시내버스 및 공항버스 승차대 다. 정류소 라. 택시 표지판 마. 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요금 표지판 바. 주차장 관리소(박스형) 사. 부설주차장 진·출입표지 아. 버스전용차선 단속초소 자. 교통 감시시설 차. 볼라드, 보호펜스 카. 횡단보도 쉼터
도로점용 허가시설물	가. 소화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나. 사설안내표지·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 가로판매대·구두수선·버스카드 판매대·벤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라.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정포·창고·자동차 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그 밖의 시설물	가. 택시, 마을버스, 시내버스 및 소방차 등의 관용차 나. 한강유람선, 수상택시 다. 광장 라. 공원(도시공원법에 따른 공원위원회 심의대상 공원은 제외)

1) 단, 설계공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발주방식) 및 일괄입찰·대안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따른 발주방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발주방식]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물은 제외

[별표 2]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대상 디자인 사업

다음 각 호 관련 사업 등이 디자인 구현 가능성, 경제성, 효과성, 확산 가능성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 검토

1.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

분 류	세 부 항 목
인구변화	고령화, 저출산, 다문화가족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디자인
차별해소	성별, 인종, 장애유무 등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한 디자인
안전안심	범죄, 재난, 사고 등으로부터 안전과 심리적 안심을 제공하는 디자인
심신건강	소외, 고립, 스트레스 등으로부터 건강과 정서적 안정감을 증진하는 디자인
생활개선	공중위생, 층간소음, 인지환경 개선 등 생활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한 디자인
행정편의	공공행정의 편의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디자인
제도개선	사회복지 제도와 시스템 등을 보완하기 위한 디자인
기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디자인

2.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분 류	세 부 항 목
정보매체	범죄예방, 재난대피 등을 돕는 사인, 영상 등 정보매체 디자인
시설물	자연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등을 위한 시설물 디자인
공 간	안전한 보행로 및 안전거점 공간 디자인
지 역	지역단위의 종합적인 생활안심 디자인
프로그램	지역안전 및 커뮤니티 강화를 위한 지속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분 류	세 부 항 목
정보매체	정보 접근성 및 길 찾기에 대한 차별이 없는 다양한 정보매체 디자인
시설물	다양한 시민의 행태와 사용상 편리성과 안전성을 반영한 시설물 디자인
공 간	다양한 시민의 접근성, 이동 연계성 및 편의성이 있는 공간 디자인
지 역	지역단위의 종합적인 유니버설디자인
프로그램	유니버설디자인 인식개선 및 확산을 위한 교육·체험·문화행사 등 프로그램

[별지 제1호서식]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자문)신청서					
사업명					
대상지위치					
신청기관		담당자 : 000기관 000 연락처 :			
주관부서		담당자 : 000과 000 연락처 :			
사업개요	규모	(전체면적, 총연장 등)	가로 세로 높이		
	용도	공공디자인 세부설명			
	구조				
	세부내역	설계발주방법	총공사비	설계비	예산분담
설계자	담당자 : 000기관 000 연락처 :				
공사기간					
주관부서 검토의견		담당부서 작성			
<p>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에 따라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p> <p>20 년 월 일</p> <p>신청인 : 000기관 000 (인·서명)</p> <p>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p> <p>※첨부 : 심의파일 (PPT 및 PDF 파일)</p>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구 지역 정체성 및 품격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장 총칙
 - 조례의 목적, 공공디자인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 규정
- 제2장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및 시행, 주민참여
- 제3장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사항
- 제4장 공공디자인 심의
 - 공공디자인 심의신청, 심의절차
- 제5장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611호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21년 12월 31일</u> 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26년 12월 31일</u> 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12.31.일자로 도래됨에 따라 안전한 도로관리 및 지속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612호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 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구청장이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작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 비용) 구청장이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를 할 때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 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는 구청장이 별도로 산정한다.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구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보급
5. 그 밖에 구청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구 주소정보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 3. 토의 및 심의결과
-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공제가입) 구청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주소정보의 홍보·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방위·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위탁) ① 구청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재교부에 관한 사항
-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배포
-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 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 9. 영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 10.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 외에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 2. 계약기간 및 금액
-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주소정보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에 따른 법령 위임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도로명주소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중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 자치단체 내 각종 업무에 주소정보의 사용분야 규정
- 건물번호판·사물주소판 제작비용 산정 등
 - 건물번호판·사물주소판 제작비용과 기준일 구 홈페이지에 고시
- 주소정보위원회
 - 위원회 명칭 변경(도로명주소위원회 → 주소정보위원회)
- 손해배상 공제가입
 -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손해배상공제가입 등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613호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 까지로 하되,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요성이 있는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2026년 12월 31일 ----- ----- -----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우리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함

2.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
 -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614호

서울특별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신청) ① 제2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가 되려는 구역에 있는 소상공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하 “구청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1. 해당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를 원활하게 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상점가를 정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	-----

골목형 상점가 개요	명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용도지역	
	규모	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상인 조직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업무구역	회원 수

시설 현황	주요시설	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편의시설	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 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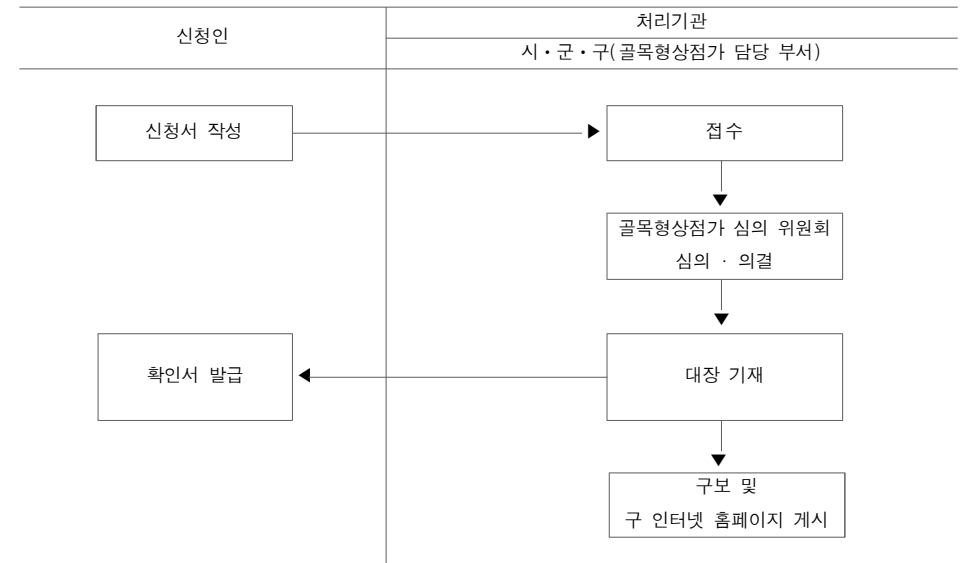
첨부서류	1. 「서울특별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

1. 명 칭 :

2. 대표자 성명 :

3. 소재지 :

4. 면적/점포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법 시행령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m²]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신청)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골목형상점가 신청을 해야 한다. (삭 제)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신청) ① 제2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가 되려는 구역에 있는 소상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1. 해당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삭 제)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삭 제)	3.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 (정관) 및 명부

현 행	개 정 안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4.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를 원활하게 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정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삭제)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명칭	1. (삭제)
2. 대표(관리)자	2. (삭제)
3. 소재지	3. (삭제)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신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중소벤처기업부 협의결과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구비요건의 완화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골목형상점가의 신청서 구비서류 완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615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을 “재개발사업구역”으로 한다.

제6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용·대부료 체납 재산

제6조제4항 중 “필요한”을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된 필요한”으로 한다.

제6조제4항에 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변상금 부과 처분
- 2.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 3. 사용·대부료 체납 대책

제23조 중 “제2조제8항”을 “제2조제9항”으로 한다.

제25조제3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민법」 제39조에 따른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 5.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구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제25조제4항 중 “제4조에 따른 주택재개발구역”을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재개발사업 구역”로 한다.

제25조제5항제4호 중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하고, 같은 호 중 “설치”를 “설치와 그 운영”으로 하며, 같은 호 중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를 “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로 한다.

제25조제5항제6호 중 “구청장이 지정한”을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는”으로 한다.

제25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지 대부료의 요율은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제1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평가액을 계산한다.

- 1. 건물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건물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 합계)
- 2. 부지면적 : 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부지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건물의 연면적]

중전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 기업에 사업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 가. 「조세특례 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 나.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투자 사업
 - 마. 외국인투자 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사업

사.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5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외국인투자 사업

라. 외국인투자 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외국인투자 사업

라. 외국인투자 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으로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사.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단지 내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의 공유재산

제28조제2항 중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감면율을 100분의 30으로 할 수 있다.”를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에서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전액감면 : 학생수가 300명 이상인 외국인학교
- 2. 75퍼센트 감면 : 학생수가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

3. 50퍼센트 감면 :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

제28조제3항 중 “시장활성화구역과 상점가”를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한다.

제28조제5항 중 “제17조제7항제1호”를 “제17조제7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중 “제35조제2항제1호”를 “제35조제2항제2호 나목·다목”으로 한다.

제28조제5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재산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제2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㉔ 구의 귀책사유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받은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0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 및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29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제75조제1호”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75조”로 한다.

제30조 중 “대부료”를 “대부료(영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중 “감액율”을 “감액률”로 하며, 같은 조 중 “100분의 70”을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3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서울특별시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서울특별시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34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 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의2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에 제8호,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9.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0.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70조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88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8조의3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1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5항 제4호·제5호, 같은조 제6항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실태조사) ① ~ ② (생략) ③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구유재산관리대장 또는 전산자료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 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구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생략)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 5. (생략) <신 설>	제6조(실태조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1. (현행과 같음) 2. ----- <u>재개발사업구역</u> ----- 3. ~ 5. (현행과 같음) 6. <u>사용·대부료 체납재산</u>
④ 제1항의 실태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구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④ ----- ----- <u>다음</u> ----- <u>각 호 사항이 포함된 필요한</u> ----- ----- ----- 1. <u>변상금 부과 처분</u> 2. <u>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u> 3. <u>사용·대부료 체납 대책</u>
제23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제23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 ----- ----- ----- ----- ----- <u>제2조제9항</u> ----- ---

현 행	개 정 안
<p>제25조(대부료의 효율) ① ~ ② (생 략)</p> <p>③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효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 3. (생 략) <신 설></p> <p><신 설></p> <p>④ 구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의 효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이상으로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주택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점유토지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5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점유한 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p> <p>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효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 3. (생 략)</p>	<p>제25조(대부료의 효율)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p> <p>1. ~ 3. (현행과 같음)</p> <p><u>4.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민법」 제39조에 따른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u></p> <p><u>5.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구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u></p> <p>④ ----- -----</p> <p><u>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재개발사업 구역</u> -----</p> <p>⑤ ----- -----.</p> <p>1. ~ 3.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구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구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구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p> <p>5. (생 략)</p> <p>6. 구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법인에게 사용토록 하는 경우</p> <p>7. ~ 14. (생 략)</p> <p><신 설></p> <p>⑦ (생 략)</p> <p>제27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생 략)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과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한다.</p>	<p>4. ----- ----- <u>벤처기업</u> ----- ----- <u>설치와 그 운영</u> ----- ----- <u>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u> ----- ----- -----</p> <p>5. (현행과 같음)</p> <p>6. ----- ----- <u>서울특별시 중구 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는</u> ----- -----</p> <p>7. ~ 14. (현행과 같음)</p> <p><u>⑥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지 대부료의 효율은 1000분의 10으로 한다.</u></p> <p>⑦ (현행과 같음)</p> <p>제27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평가액을 계산한다.</u> <u>1. 건물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 합계)</u></p>

현 행	개 정 안
<p>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p> <p>④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p> <p>1. 건물공용면적 : 해당건물의 공용면적합계 ×(대부 받은자의 건물전용면적÷해당 건물의 전용면적합계)</p> <p>2. 부지공용면적 : 해당부지의 공용면적합계×[대부 받은자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해당 건물의 연면적]</p> <p>⑤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p>	<p>2. 부지면적 : 대부 받은 자의 부지 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건물의 연면적]</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⑥ 구가 건립한 지식산업센터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각 공장 면적에 비례한 부지평가액을 해당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p> <p>⑦ 2층 이상 또는 지하2층 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p> <p>제28조(대부료 등의 감면)</p> <p>①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다음의 외국인투자 기업에 사업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할 수 있다.</p> <p>1.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p> <p>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나.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 이 경우 대부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 선정절차와 방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삭 제></p> <p><삭 제></p> <p>제28조(대부료 등의 감면)</p> <p>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 기업에 사업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p> <p>가. 「조세특례 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투자 사업</p>

현행	개정안
<p>다.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p>	<p>마. 외국인투자 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사업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p>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5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외국인투자 사업 라. 외국인투자 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p> <p>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②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에 따라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구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을 100분의 30으로 할 수 있다.</p>	<p>가.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외국인투자 사업 라. 외국인투자 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으로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사.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단지 내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의 공유재산</p> <p>②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 제3항----- ----- -----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전액감면 : 학생수가 300명 이상인 외국인학교 2. 75퍼센트 감면 : 학생수가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p>

현 행	개 정 안
<p>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구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p> <p>④ (생 략)</p> <p>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p> <p>1. ~ 3. (생 략)</p> <p><신 설></p>	<p>3. 50퍼센트 감면 :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p> <p>③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제17조제7항제2호 제35조제2항제2호 나목·다목-----</p> <p>1. ~ 3. (현행과 같음)</p> <p>4.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p> <p>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재산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p>
<p><신 설></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29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p> <p>① ~ ③ (생 략)</p> <p>④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전세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되,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 제75조제1호에서 규정한 보증금의 예를 준용한다. 다만, 전세금의 이자 수입은 구수입으로 한다.</p> <p>제30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 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p> <p>제31조(대부료의 납기)</p> <p>① ~ ③ (생 략)</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p>	<p>⑥ 구의 귀책사유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받은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0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 및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p> <p>제29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75조-----</p> <p>제30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① - 대부료(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감액률-----100분의 100-----.</p> <p>제31조(대부료의 납기)</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삭 제></p>

현행	개정안
<p>제31조의2(대부료의 분할납부 이자율 등)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이자율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p> <p>②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부료를 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p>	<p>제31조의2(대부료의 분할납부 이자율 등) ① ----- ----- <u>행정안전부장관</u> -----</p> <p>② ----- ----- <u>행정안전부장관</u> -----</p>
<p>제34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중구청이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는 경우 이자는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사용을 시작한 때부터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1. ~ 7. (생략)</p> <p>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의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안의 토지(서울특별시장이 같은 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한한다)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할 때</p>	<p>제34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 <u>행정안전부장관</u>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 ----- <u>재개발사업</u> ----- <u>구청</u> <u>장</u>----- <u>재개발사업</u> ----- <u>재개발사업</u> -----</p>

현행	개정안
<p>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p> <p>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의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의 토지(서울특별시장이 같은 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한한다)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로부터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할 때</p> <p>③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신설></p>	<p>② ----- ----- <u>행정안전</u> <u>부장관</u>-----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 <u>재개발사업</u> ----- <u>구청</u> <u>장</u>----- <u>재개발사업</u> ----- <u>재개발사업</u> -----</p> <p><삭제></p> <p>④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의2 (교환차금의 분납)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의2 (교환차금의 분납) ----- ----- ----- ----- <u>행정안</u> <u>전부장관</u> ----- -----
제36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1. ~ 7.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36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1. ~ 7. (현행과 같음) <u>8.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 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u> <u>9.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u> <u>10.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u>
제70조(불용품의 매각) ① ~ ③ (생략)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 이하로 매각하여야 한다. 다만, 매물품당 내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70조(불용품의 매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u>감정평가법인등</u> ----- -----

현 행	개 정 안
제88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 ② (생략) ③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88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행</u> <u>정자치부장관</u> ----- -----
제88조의3(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88조의3(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 ----- <u>행정안전부장</u> <u>관</u> ----- -----
제91조(구유토지의 분필)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구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한다.	제91조(구유토지의 분필) ----- ----- ----- ----- ----- ----- ----- ----- ----- <u>「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u>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년친화강소기업 등을 구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대상에 추가
- 구의 귀책사유로 인해 구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용료·대부료 전액 감면
- 전년대비 사용료·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에 대하여 감액할 수 있는 상한을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으로 조정
- 사립학교와 평생교육시설 등이 구유재산을 사용·대부할 수 있도록 사용료·대부료의 요율기준에 추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616호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21년 12월 31일</u> 까지로 하되,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존속기한) ----- ----- <u>2026년 12월 31일</u> ----- ----- ----- -----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지원토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12월 31일”로 변경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617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제11조로 하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9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정 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u><신 설></u>	제9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미리 위촉한 사람

<u><신 설></u>	<p>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p> <p>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 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p> <p>⑤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제10조(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p>
--------------------	--

제8조 (생략)

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구제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대리인 선정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신청인의 소유재산의 평가방법, 대리인 신청방법 및 절차 등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선정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 판단기준인 소유재산 평가방법 조항 신설
- 선정 대리인 신청방법 및 통지에 관한 조항 신설
- 선정 대리인 의무 및 우대사항에 관한 조항 신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618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5항제12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제2항제3항”으로 하고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제1호 중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외의 본문”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 단서 외의 본문”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 가목 및 나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 나목”으로 한다.

제12조 중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5항·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정한다.	제5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제2항·제3항 ————— —————. .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외의 부분의 “5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단서 삭제>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 —————. .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 단서 외의 부분의 “5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 —————. .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 가목 및 나목의 “3년”을 “10년”으로 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 나목 ————— —————. .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감면 제외대상)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 —————.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감면 제외대상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규정의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함.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감면 제외대상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됨에 따라 법조항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함.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 체계가 변경되며 ‘주민세 재산분’이 폐지됨에 따라, 조문에서 이를 삭제하여 성실납세자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투명한 지방세 과세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세 세목 폐지에 따른 성실납부자 기준 조항 개정
 - ‘주민세 재산분’이 폐지됨에 따라 조문에서 세목명 삭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620호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위 입 사 무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1.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가. 6급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의회 내 전보·휴직 및 휴직에 따른 복직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구 의 회 사무과장
나. 의회내 별정직·임기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임용권	○ 지방자치법 제91조	구 의 회 사무과장
다. 7급이하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제외)의 소내 전보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보건소장
2.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가. 개설 및 변경사항 등록	○ 「약사법」 제20조제2항	
나. 폐업·휴업·재개업신고	○ 같은 법 제22조	
다. 지도·감독(보고와 검사 등, 업무개시 명령 등, 회수폐기 및 공표명령 등, 개수 명령, 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 같은 법 제69조 내지 제72조, 제74조 내지 제76조	
라. 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 같은 법 제41조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2조	
마. 약국제제의 제조업무 폐지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2조	
바. 청문 실시	○ 같은 법 제77조	
사. 과징금 부과·징수	○ 같은 법 제81조	
아.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98조	
자. 등록증 등의 갱신, 재발급	○ 같은 법 제8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차. 약국, 점포이외의 장소 의약품 판매승인	○ 같은 법 제50조제1항	
카. 포상금 지급	○ 같은 법 제9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타.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 「약사법」 제21조의2	
3. 의료기기판매업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가. 의료기기판매업 등의 신고, 변경신고, 폐업신고 등의 수리	○ 「의료기기법」 제17조	
나. 지도·감독(보고와 검사 등, 회수폐기	○ 같은 법 제32조, 제34조 내지 제36조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및 공표명령 등, 사용중지명령 등,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다. 청문 실시	○ 같은 법 제39조	
라. 과징금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38조	
마. 과태료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56조	
바. 허가증 등의 재발급 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사. 제조업자들의 지위승계 등	○ 같은 법 제47조	
4. 의료기관 업무에 관한 사무		보건소장
가. 개설신고	○ 「의료법」 제33조제3항	
나. 변경신고	○ 같은 법 제33조제5항	
다. 휴·폐업신고	○ 같은 법 제40조제1항	
라. 지도·감독(업무개시명령, 보고와 업무검사 등, 시정명령 등, 개설허가 취소 등)	○ 같은 법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3조, 제64조	
마.. 청문 실시	○ 같은 법 제84조	
바. 과징금 부과·징수	○ 같은 법 제67조	
사..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92조	
5.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의한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 「의료법」 제35조	보건소장
6. 안마·점골·침구시술소에 관한 사항		보건소장
가. 안마시술소개설·변경신고·휴·폐업 및 지도감독 등	○ 「의료법」 제82조	
나. 점골·침·구시술소개설·변경, 휴·폐업신고 및 지도감독 등	○ 같은 법 제81조	
7.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가. 개설등록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나. 폐업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같은 법 제13조	
다. 보고와 검사 등	○ 같은 법 제15조	
라.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 같은 법 제24조	
마. 과태료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33조	
바. 시정명령	○ 같은 법 제23조	
사. 청문 실시	○ 같은 법 제26조	
8. 치과기공소에 관한 사무		보건소장
가. 개설등록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	
나. 폐업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같은 법 제13조	
다. 보고와 검사 등	○ 같은 법 제15조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라.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마..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바. 시정명령 사. 청문실시	○ 같은 법 제24조 ○ 같은 법 제33조 ○ 같은 법 제23조 ○ 같은 법 제26조	보건소장
9.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나.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다.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라. 응급의료기관 이외의 의료 기관의 응급의료시설 설치 신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 같은 법 제34조 ○ 같은 법 제35조 ○ 같은 법 제35조의2	보건소장
10.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구급차등 운용의 통보 또는 신고 등 나. 구급차등의 운용의 정지 및 말소 등록 요청 다. 구급차의 지도 감독 라.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허가 취소(신고대상인 경우 폐쇄) 및 업무의 정지 마. 청문 바.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 같은 법 제45조 ○ 같은 법 제50조 ○ 같은 법 제55조제2항 ○ 같은 법 제56조 ○ 같은 법 제57조	보건소장
11. 세탁물처리업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신고 나.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지도·감독	○ 의료법 제16조 ○ 의료기관세탁물관리 규칙 제7조 ○ 의료법 제16조, 제63조, 제64조 ○ 의료기관세탁물관리 규칙 제11조	보건소장
12. 마약류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및 변경 나. 마약류취급자허가증 등의 교부와 등재 및 변경, 재발급 다. 폐업 등의 신고수리 라. 대마의 운반, 보관 등 마. 사고마약류의 사유보고 접수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 바.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대한 승인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조 ○ 같은 법 제7조 ○ 같은 법 제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 같은 법 제13조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사. 대마재배자의 보고 등 아. 출입, 검사와 수거 자. 마약류의 폐기명령 및 업무보고 명령 차. 허가 등 취소와 업무보고 명령 카. 청문의 실시 타. 과징금 부과 및 징수 파.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 같은 법 제41조 ○ 같은 법 제42조, 제43조 ○ 같은 법 제44조 ○ 같은 법 제45조 ○ 같은 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같은 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보건소장
13 의약품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약품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사항 허가 나. 의약품 도매상 관리약사 신고수리 다.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라. 지도·감독(보고와 검사 등, 업무개시명령, 폐기명령 등, 회수폐기 및 공표명령 등, 사용중지명령 등, 허가 취소와 업무정지 등) 마. 청문 바. 허가증 등의 갱신, 재발급	○ 「약사법」 제45조 ○ 같은 법 제45조 ○ 같은 법 제47조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제7호관련 별표6 ○ 같은 법 제69조 내지 제72조, 제74조, 제76조 ○ 같은 법 제77조 ○ 같은 법 제8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보건소장
사. 과징금부과 및 징수 아. 과태료부과 및 징수 자. 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등	○ 같은 법 제81조 ○ 같은 법 제98조 ○ 같은 법 제89조	
14.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및 변경 나. 휴업·폐업 및 재개신고 다. 지도·감독(보고와 검사 등, 업무개시명령, 폐기명령 등, 회수폐기 및 공표명령 등, 사용중지명령 등, 허가 취소와 업무정지 등) 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 마. 청문 바. 등록증 등의 갱신, 재발급	○ 「약사법」 제44조의2 ○ 같은 법 제44조의2 ○ 같은 법 제69조 내지 제72조, 제74조, 제76조 ○ 같은 법 제76조의3 ○ 같은 법 제77조 ○ 같은 법 제8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사. 과징금부과 및 징수 아. 과태료부과 및 징수 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 같은 법 제81조 ○ 같은 법 제98조 ○ 같은 법 제44조의5	보건의장
15. 의료기기수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료기기수리업의 신고, 변경신고, 폐업신고 등의 수리	○ 「의료기기법」 제16조	
나. 지도·감독(보고와 검사 등, 회수폐기 및 공표명령 등, 사용중지명령 등,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 같은 법 제32조, 제34조 내지 제36조	
다. 청문 실시	○ 같은 법 제39조	
라. 과징금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38조	
마. 과태료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56조	
바. 허가증 등의 재발급 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사. 제조업자들의 지위승계 등	○ 같은 법 제47조	
16.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같은 법 제6조의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table border="1"> <tr> <td> 15. 의료기기수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료기기수리업의 신고, 변경신고, 폐업신고 등의 수리 나. 지도·감독(보고와 검사 등, 회수폐기 및 공표명령 등, 사용중지명령 등,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다. 청문 실시 라. 과징금부과 및 징수 마. 과태료부과 및 징수 바. 허가증 등의 재발급 등 사. 제조업자들의 지위승계 등 </td> <td> ○ 「의료기기법」 제16조 ○ 같은 법 제32조, 제34조 내지 제36조 ○ 같은 법 제39조 ○ 같은 법 제38조 ○ 같은 법 제5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 같은 법 제47조 </td> <td>보건의장</td> </tr> </table>	15. 의료기기수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료기기수리업의 신고, 변경신고, 폐업신고 등의 수리 나. 지도·감독(보고와 검사 등, 회수폐기 및 공표명령 등, 사용중지명령 등,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다. 청문 실시 라. 과징금부과 및 징수 마. 과태료부과 및 징수 바. 허가증 등의 재발급 등 사. 제조업자들의 지위승계 등	○ 「의료기기법」 제16조 ○ 같은 법 제32조, 제34조 내지 제36조 ○ 같은 법 제39조 ○ 같은 법 제38조 ○ 같은 법 제5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 같은 법 제47조	보건의장
15. 의료기기수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료기기수리업의 신고, 변경신고, 폐업신고 등의 수리 나. 지도·감독(보고와 검사 등, 회수폐기 및 공표명령 등, 사용중지명령 등,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다. 청문 실시 라. 과징금부과 및 징수 마. 과태료부과 및 징수 바. 허가증 등의 재발급 등 사. 제조업자들의 지위승계 등	○ 「의료기기법」 제16조 ○ 같은 법 제32조, 제34조 내지 제36조 ○ 같은 법 제39조 ○ 같은 법 제38조 ○ 같은 법 제5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 같은 법 제47조	보건의장		
<신 설>	<table border="1"> <tr> <td> 16.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td> <td>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같은 법 제6조의3 </td> <td>동 장</td> </tr> </table>	16.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같은 법 제6조의3	동 장
16.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같은 법 제6조의3	동 장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롭게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관련 산하기관에 권한을 위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료기기수리업 신고·관리 사무의 지자체이관에 따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보건소장에게 권한위임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에 따라, 주민접근성, 편리성을 고려하여 동장에게 권한위임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621호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6조(이의신청) ①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이의신청에 대한 소명자료 등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이의신청)</p> <p>①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소명자료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p> <p>③ 구청장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p>	<p>제16조(이의신청)</p> <p>①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u>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u>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u>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u> 그 이의신청에 대한 소명자료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p> <p>③ 구청장은 <u>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u>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p> <p><u>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p>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이의신청 결과 확정 전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해야하는 불합리 시정을 위해 이의신청 기간의 단축이 필요하여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변경
-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 통보 기간을 60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변경

[규 칙]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746호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제17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 운반. 처리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출 일시와 장소를 지정 운영하며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를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출 일시와 장소를 지정 운영하며 배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종량제봉투중 생활폐기물용은 흰색(반투명), 사업장폐기물용은 엷은 녹색으로 하고 특수종량제봉투는 흰색, 공공용 봉투는 청색으로 한다.”를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종량제봉투중 생활폐기물용은 흰색(반투명), 특수종량제봉투는 흰색, 공공용 봉투는 청색으로 한다.”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

규격봉투가격의 구성내역(제5조 관련)

1. 일반종량제 봉투

○ 생활폐기물용 봉투

(단위: 원)

구 분	2017. 1. 1. ~ 2020.12.31.		2021. 1. 1. ~	
	판매가	판매이윤	판매가	판매이윤
3ℓ	90	5	90	8
3ℓ(재)	90	5	90	8
5ℓ	130	8	130	12
10ℓ(재)	250	15	250	23
20ℓ	490	29	490	44
20ℓ(재)	490	29	490	44
30ℓ	740	44	740	67
50ℓ	1,250	75	1,250	113
75ℓ	1,880	113	1,880	169

2. 특수종량제봉투

(단위: 원)

구 분	2017. 1. 1. ~ 2020.12.31.		2021. 1. 1. ~	
	판매가	판매이윤	판매가	판매이윤
20ℓ	2,040	122	2,040	184
50ℓ	5,100	306	5,100	459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생활폐기물 배출시간 및 장소)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제17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 운반. 처리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출 일시와 장소를 지정 운영하며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폐기물의 종류, 성상 및 배출지역 특성 등에 따라 별도의 배출시간 및 배출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p> <p>1. ~ 2. (생 략)</p> <p>제7조(규격봉투의 색상·규격 및 재질등) 조례 제22호에 따른 규격봉투의 색상·규격 및 재질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종량제봉투중 생활폐기물용은 흰색(반투명), 사업장폐기물용은 옅은 녹색</p>	<p>제4조(생활폐기물 배출시간 및 장소)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출 일시와 장소를 지정 운영하며 배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폐기물의 종류, 성상 및 배출지역 특성 등에 따라 별도의 배출시간 및 배출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제7조(규격봉투의 색상·규격 및 재질등) 조례 제22호에 따른 규격봉투의 색상·규격 및 재질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종량제봉투중 생활폐기물용은 흰색(반투명), 특수종량제봉투는 흰색, 공공용 봉</p>

<p>으로 하고 특수종량제봉투는 흰색, 공공용 봉투는 청색으로 한다.</p> <p>2. (생 략)</p> <p>별표2 규격봉투가격의 구성내역(제5조 관련)</p> <p>1. 일반종량제 봉투 ○ 사업장폐기물용 봉투 (단위: 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2">2017. 1. 1. ~ 2020.12.31.</th> <th colspan="2">2021. 1. 1. ~</th> </tr> <tr> <th>판매가</th> <th>판매이윤</th> <th>판매가</th> <th>판매이윤</th> </tr> </thead> <tbody> <tr> <td>50 ℓ</td> <td>2,000</td> <td>120</td> <td>2,000</td> <td>180</td> </tr> <tr> <td>75 ℓ</td> <td>3,000</td> <td>180</td> <td>3,000</td> <td>270</td> </tr> </tbody> </table>	구 분	2017. 1. 1. ~ 2020.12.31.		2021. 1. 1. ~		판매가	판매이윤	판매가	판매이윤	50 ℓ	2,000	120	2,000	180	75 ℓ	3,000	180	3,000	270	<p>투는 청색으로 한다.</p> <p>2. (현행과 같음)</p> <p>별표2 규격봉투가격의 구성내역(제5조 관련)</p> <p>1. 일반종량제 봉투 ○ 사업장폐기물용 봉투 (삭 제)</p>
구 분		2017. 1. 1. ~ 2020.12.31.		2021. 1. 1. ~																
	판매가	판매이윤	판매가	판매이윤																
50 ℓ	2,000	120	2,000	180																
75 ℓ	3,000	180	3,000	270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관리기준』이 개정되어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자원회수시설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 및 사업장용 종량제봉투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청소행정 다변화에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업장용 종량제봉투 사용 및 구청의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내용 삭제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747호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대여신청시 구비서류) 중 “인감증명”을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대여신청시 구비서류) 3. 보증인의 <u>인감증명</u> (조례 제12 조제1항 해당자에 한함)	제8조(대여신청시 구비서류) 3. 보증인의 <u>인감증명 또는 본인 서명사실확인서</u> (조례 제12조제1 항 해당자에 한함)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요구 및 대여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관
 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여신청시 구비서류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가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서식 목록

2021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748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제13조(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제14조(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관리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을)까지 전부 삭제하고,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1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번호	서 식 명	비고
1	일반(등기)우편 송달부	
2	송달부(교부)	
3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4	송달불능부	
5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6	지방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	
7	지방세환급금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	
8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	
9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	
10	서울특별시 중구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	
11	서울특별시 중구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	
12	서울특별시 중구 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일반(등기)우편 송달부								
일련 번호	세목	연도 기분	과세 번호	납세자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세액	주소	반송 사유
*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송달부(교부)									
과세번호 납세자명 출력순번 과세물건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납부세액	우편번호 연락처	주소	교부장소	수령인			수령 일자	미교부 사유
					성명	납세자 와의 관계	서명		
누계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구분	세목	연도/ 기분	납세의무자		송달지	등기번호	반송일자	반송사유	인수자
			성명	주소					
※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 등 서류명을 기재함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년도 기분 세(서류명 기재) 송달불능부

과세 번호	납세의무자 주소		1차송달		재송달			공시 송달 일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등기번호	반송일	송달지	반송사유	반송일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년도 기분(월분) 세를 다음과 같이 취소(경정)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결 재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부과취소(경정) 내역

세목	연도/ 기분	당초		취소		경정		차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구세에 병기·부과되는 시세는 구세 취소·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지방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

과세 번호	연도/ 기분	납세의무자		주민(법인) 등록번호	세액(본세)					취소· 경정사유
		성명	주소		세목	당초	취소	경정	비고	

※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지방세환급금 총당 결의서											
결재		발 의				년 월 일		(인)			
징수관		징 수 부 등 재				년 월 일		(인)			
과 장		지 방 세 환 급 금 정 리 부 등 재				년 월 일		(인)			
팀 장		총 당 통 지 서 발 부				년 월 일		(인)			
담당자		통 지 서 번 호				년 월 일		(인)			
총당금액 (금 원) (₩)											
세입항목	구분	세입연도	세입과목				환급금총액	과오납연월일	환급자		
			관	항	목	과세번호			주소		성명
	총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총당액 총액)										
총당내역	구분	세입연도	세입과목				미납총액	총당액	납세의무자		
			관	항	목	과세번호			주소		성명
	총당 후 미수납(총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										
적요								수납부정리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서울특별시 중구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청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사건번호 (접수번호)				
처분내용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연도	기분	세목	부과액
<p>본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선정 대리인의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구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니고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 <p>「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선정 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며, 서울특별시 중구가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p>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배우자의 소유 재산 포함)의 가액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서울특별시 중구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

① 신청인 용

○ 신청인 : ○○○ 귀하

1. 서울특별시 중구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서울특별시 중구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는 (재산·소득요건 미충족)의 사유로 서울특별시 중구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중구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서울특별시 중구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의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선정 대리인

성 명		자 격	
사 무 실			
연 락 처	(전화)		, (휴대폰)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 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② 선정대리인 용

○ 서울특별시 중구 선정 대리인 : ○○○ 귀하

신청인 ○○○님이 '00.00.00. 제출한 「서울특별시 중구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귀하를 서울특별시 중구 선정 대리인으로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지정 접수건(지정사건)

신 청 인(청구인)		접수(사건)번호	
과세기간·세목·청구세액		연 락 처	
주 소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 청장
관인생략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서울특별시 중구 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번호	청구 일자	사건번호	납세자	청구 세액	신청일	지정일	선정대리인	결정 내용	인용 금액

* 결정내용 : 인용(직권취소에 따른 각하, 재조사 포함), 기각, 각하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신청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13(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14(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관리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선정 대리인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서식을 반영하고, 기존 별지 서식 중 규칙에 맞지 않는 부분을 현행 규칙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선정 대리인 신청서 서식 신설(안 제12조)
-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 서식 신설(안 제13조)
- 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기록·관리 서식 신설(안 제14조)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749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제2장의2(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지방소비세

제8조의2(납입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법 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 및 명세를 통보

받으면 별지 제15호 서식의 지방소비세 납입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 적용기간) 제8조의2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별지서식

서식번호	서 식 명	비고
1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	
2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처리부	
3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	
4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내역서	
5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	
6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	
7	건축물 조사표	
8	주택 조사표	
9	선박 조사표	
10	항공기 조사표	
11	재산세 비과세 처리부	
12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	
13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	
14	납세관리인 관리대장	
15	지방소비세 납입 처리부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지방소비세 납입 처리부

월별	국세청 납입액	국세청 납입일	안분기준	안분액	납입액	납입일	결 재		
							담당자	팀 장	과 장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m²)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수정신고 등) <u>법정신고기</u> <u>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u> <u>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u> <u>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u>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 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 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p> <p><신 설> <신 설></p>	<p>제3조(수정신고 등) <u>납세의무자</u> ----- ----- ----- ----- ----- ----- ----- ----- ----- ----- -----</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의2 지방소비세</p> <p>제8조의2(납입관리) <u>부과부서의</u> <u>장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6</u> <u>조제2항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u> <u>입 및 명세를 통보받으면 별지</u> <u>제15호 서식의 지방소비세 납입</u> <u>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u></p>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기한 후 신고자의 수정신고·경정청구가 허용되어 그 내용을 규칙에 반영하고, 지방소비세가 구세로 신설됨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처리부 서식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한 후 신고자의 수정신고·경정청구가 허용되어 이에 대한 조문 정비
- 지방소비세 납입처리부 서식 신설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750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조사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특정납세의무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
3.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 4. "일반세무조사"란 특정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정 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이하 "과세 적정성"이라 한다)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 5. "특별세무조사"란 세금을 탈루한 방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세무조사의 방법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 6. "직접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이하 "사무소 등"이라 한다)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그 관련이 있는 자 등을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 7. "서면세무조사"란 직접세무조사 이외에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 등으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 8. "전부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세무조사대상이 되는 기간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 9. "부분세무조사"란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 10. "전산분석"이란 지방세원의 관리를 위하여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상황, 신고내용 등 보유·관리하는 전산 자료와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수집하는 과세자료 등에 대한 전산분석 등을 통하여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1. 신의성실의 원칙 :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납세의 무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근거과세의 원칙 :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명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야 하고 이를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 조사비례의 원칙 :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4. 납세의무자별 구분조사 원칙 :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① 세무조사는 지방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는 등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조사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① 납세자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사업장(지점, 제조장, 직매장, 하차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조사 시작 전 또는 조사 진행 중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간 내에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다.

제7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하여 지방세관계법 등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조사대상의 선정

제8조(조사대상자 선정) 조사대상자는 지방세에 관한 신고, 납세의 성실도 및 업종 등을 기준으로 일반조사대상자와 특별조사대상자로 구분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선정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 유지)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세무조사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자의 성실신고 존중) 구청장은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 ① 구청장은 해당 납세자의 세원종합관리상황과 서면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반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제4항의 직접세무조사 대상은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정기선정 대상 건수가 3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관련 지방세심의위원회 진행은 위원이 세무조사대상자를 식별 할 수 없도록 법 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한다.

③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으로 관할이 이전되었으나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구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한다.

④ 구청장은 일반세무조사 시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직접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 1.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 2.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법인 또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이 「지방세법시행령」제85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상인 경우
- 3.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4.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받은 경우
- 5. 그 밖에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⑤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 방지, 신고납부 풍토조성, 경제·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사대상을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특별세무조사의 대상자) ①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는 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자로 하되, 그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 1. 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지방세관계법과 관련된 판례·지침·유권해석 등의 변경으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일반세무조사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탈루유형,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의 계획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3조(부분세무조사 대상자) 부분세무조사 대상자는 세원의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 검증으로 조사목적 달성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다.

- 1.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 2. 법 제96조제5항(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6. 위장·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14조(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 1.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라 유공납세자로 선발된 자
-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만, 최근 5년간 2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제외한다.
- 3.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중 중소기업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 1. 해당 법인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 2.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이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의 시공을 하는 경우
- 3. 법인의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

제3장 세무조사 실시

제15조(중복조사금지) ① 동일한 납세자의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시작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구청장이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한 납세자에 대하여 전부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분세무조사를 받은 부분은 조사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 조사기간, 조사방법을 미리 정하고 조사공무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①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법 제77조제2항의 납세자보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세목 등과 관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2.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방법) 세무조사는 조사대상자의 납세성실도수준, 사업규모, 업종, 과세자료 분석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1. 직접조사를 하는 때에는 납세자가 비치, 기재하고 있는 장부 및 그와 관련된 증명서류(전산조직에 의해 장부와 증명서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조사와 그 장부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각종 현황조사, 거래처 또는 현장조사
- 2. 서면조사를 하는 때에는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지방세의 납부 또는 과세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
- 3. 부분조사를 하는 때에는 지방세원의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

제19조(조사장소의 한정)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주소·거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해당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조사시간의 제한) 세무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납세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구가 있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 사전통지 생략이유 등을 기재한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 ① 제21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1. 화재나 도난,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중상해,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세무조사를 연기 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 2. 세무조사를 연기 받으려는 기간
- 3. 세무조사를 연기 받으려는 사유
-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조사기간) 구청장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사기간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제24조(조사기간의 계산) 조사기간은 조사시작일(최종 자료제출일부터 기산한다)부터 조사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조사기간 중 토요일·공휴일 등을 포함한다.

제25조(조사기간 연장의 제한) 세무조사를 시작한 후 기한 내에 법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26조(수색, 압수 등의 금지) ①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납세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 등을 수색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압수·영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범칙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발견한 경우
 - 2. 비밀장부 등 범칙증거를 발견한 경우
-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조사공무원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로의 전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압수·영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압수·영치증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압수·영치목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장부, 서류 등의 예치) ①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탈루혐의에 대한 증명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장부·서류 등을 예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예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예치증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예치목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부·서류 등의 예치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조사권 남용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방법이 아닌 조사편의 등의 수단으로 조사권을 남용한 조사공무원과 조사책임자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① 조사대상 납세의무자 및 그와 관련된 자에 대한 조사권의 행사는 해당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조사사무관리

제30조(조사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업무량과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일 납세자에게 중복조사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1조(조사준비) 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의 시작에 앞서 활용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분석, 검토하여 조사대상자에 대한 문제점과 중점조사 사항을 도출하는 조사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 신고납부 내용
- 2. 전산분석 자료
- 3. 행정기관 자료
- 4. 그 밖의 정보 및 수집자료 등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준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조사준비서를 작성하고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사책임자는 효과적인 조사업무가 집행되도록 미리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조사공무

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2조(부분세무조사의 실시) ① 구청장은 납세자의 편의 및 조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4.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33조(조사지휘) ① 모든 세무조사는 조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실시한다.

② 조사책임자가 장기간 조사지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조사책임자가 된다.

제34조(조사의 시작 등)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신분증 증명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관리현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법 제77조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낭독해 주어야 하는 납세자관리현장의 요지와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35조(조사내용 보고) 조사공무원은 조사한 사항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조사진행관리) ① 조사공무원은 조사준비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조사책임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을 서면으로 복명하여야 한다.

② 세무조사의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선정된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앞으로 조사할 사항과 새로운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선정된 조사대상이 서면조사서 등 자료제출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④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서류를 확보하고, 분쟁의 소지를 미리 예방하여야 한다.

제37조(조사의 종결)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종결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조사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38조(세무조사 결과통지)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결과를 확정하였을 때에는 조사결과를 확정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세무조사 대상 기간 및 세목
-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 및 산출근거
- 3. 법 제49조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 4.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1. 「지방세징수법」제22조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 2. 조사결과를 통지하려는 날부터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 3.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폐업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 4.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 5.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및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
- 6.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제39조(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 보급) ① 조사과정에서 파악되는 각종 과세정보는 “과세자료처리대상”에 등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세자료 또는 국세와 관련된 자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구청장과 시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조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 조사기법사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 관리) ① 구청장은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현황·조사연혁 및 폐업사실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중복 세무조사 방지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를 세무종합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1. 세무조사 대상자
- 2. 세무조사 기간·내용·추징세액·추징사유·불복내용 등
- 3. 납세자별·세목별 세무조사 결과 대장 관리 등 기타 필요한 업무

제5장 보칙

제41조(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 등) ①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구청장이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전출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표를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별표의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

가.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 1)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 2) 조사공무원은 인격의 도야와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 3) 조사공무원은 세정의 최일선 역군으로써 세정의 거울이 됨을 명심하여 항상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공정하고 친절한 자세로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 4) 조사공무원은 권위주의적 언행을 삼가고 납세자의 권익과 편의를 최대한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세무조사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5) 조사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좇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6) 조사공무원은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고 업무집행과정에서 법령을 무리하게 확대해석하거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사목적과 직접 관계없는 내용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7)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은 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조사 착수 전 준수사항

- 1)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세무조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야 한다.

- 2) 납세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사예고 이외에는 조사계획이나 준비조사 내용 등을 조사 착수 전에 납세자나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조사계획 수립 후 실시조사가 착수되기 전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납세자와 접촉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조사 진행 중 준수사항

- 1) 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반드시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의 목적, 조사대상 선정이유, 조사기간 및 범위를 상세히 설명하여 납세자가 조사사유를 충분히 납득하도록 하여야 하며 준비된 안내문을 전달하여야 한다.
- 2)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거나 이해를 못할 경우에는 조사권의 근거와 한계를 상세히 설명하여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래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따라야 한다.
- 3) 세무조사에 착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보고체계를 통하여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4)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에 의한 조사방법, 조사범위, 조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 5)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주택이나 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수색·영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제시하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색하지 않고 조사 현장에서 발견된 비밀장부나 증빙서류를 납세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았을 때에는 즉시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 6) 조사공무원은 근무시간 중에만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외에 조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상사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7) 조사 진행 중 조사사항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

히 주어야 하며, 납세자가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먼저 문제점에 대하여 긍정적인 자세로 검토하여야 한다.

8) 납세의무자의 소명내용이 적법하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중하게 사과한 후 이를 솔직하게 받아들여 즉시 시정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의 소명내용이 잘못된 경우에는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잘못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9) 납세의무자의 이견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은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조사를 마칠 때 준수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마칠 때에는 납세자에게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알리고, 조사기간 동안 성실한 협조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여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조사 중에 제출받은 조사 관련 장부와 증명서류를 납세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와 증명 서류의 반환으로 과세에 중대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의 동의하에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종결 즉시 종결 결과를 보고하고,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조사내용 통지 전까지 조사적출내용 등 조사 진행사항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5) 납세자가 조사내용의 통지를 받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어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과세자료 또는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도상의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에는 세법 등 개정 건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납세자가 권리행사(불복청구, 그 밖에 세법에 따라 납세자가 갖는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압 수 · 영 치 증

법인명(상 호):

소재지(사업장):

대표자(성 명):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제26조에 따라
위 납세자에 대한 별지 목록의 서류 등을 조사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압수·영치합니다

영치사유					
영치기관					
영치공무원	소 속		직 급		성 명 (인)
입회인 등	소 속			성 명	(인)
서명날인 거부 기재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별지 제2호서식]

압 수 · 영 치 목 록

일련번호	물 건 명	수 량	제 출 자	소 유 자	비 고

[별지 제3호서식]

예 치 증						
법인명(상 호):						
소재지(사업장):						
대표자(성 명):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27조에 따라 위 납세자에 대한 별지 목록의 서류 등을 조사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예치합니다.						
예치사유						
예치기관						
예치공무원	소 속		직 급		성 명	(인)
입회인 등	소 속			성 명		(인)
서명날인 거부 기재						
<p>년 월 일</p> <p>서울특별시 중구청장</p>						

[별지 제4호서식]

예 치 목 록					
일련번호	물 건 명	수 량	제출자	소유자	비 고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과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세무조사운영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우리 구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 행정안전부의 표준안 및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한 신설 및 정비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오탈자 정비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751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규정 (제2조 관련)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총 계		1,250	812	25	116	297
정무직 계		1	1			
구 청 장		1	1			
일반직 계		1,242	808	21	116	297
3급 소개		1	1			
행정		1	1			
4급 소개		6	5		1	
서기관		3	3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2			
기술서기관(보건·의무)		1			1	
5급 소개		59	30	1	13	15
행정		36	21	1		14
시설(토목1, 건축1, 지적1)		3	3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복지		1	1			
행정·보건		2			2	
행정·시설		4	4			
행정·보건·간호		1			1	
의무·약무		1			1	
보건·의료기술·의무·간호		1			1	
의무		8			8	
6급 소개		249	171	3	24	51
행정		154	98	3	9	44
세무		17	17			
사회복지		9	5			4
전산		1	1			
방호		1	1			
공업(기계2, 전기2, 화공1)		5	5			
보건		1			1	
복지		4	4			
의료기술		1			1	
약무		2			2	
간호		6			6	
환경		2	2			
시설(토목8, 건축6, 지적4, 디자인1, 도시계획2)		21	21			
시설(토목·건축)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행정·보건		3	1			
행정·시설(행정4, 토목1, 건축1)		6	6			
보건·의료기술		1			1	
공업(화공)·보건·환경		1	1			
보건진료		2			2	
운전		5	5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7급 소개		383	265	10	38	70
행정		218	141	6	10	61
세무		26	26			
사회복지		19	9		1	9
전산		3	3			
숙기		3		3		
방호		6	6			
공업(기계5, 전기6, 화공3)		14	13	1		
복지		3	3			
수의		1	1			
보건		8	3			5
식품위생		1				1
의료기술		5				5
환경		1	1			
약무		2				2
간호		14				14
시설(토목15, 건축12, 지적6, 디자인1, 도시계획2, 교통시설2)		38	38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2	2			
위생		3	3			
시설관리		4	4			
운전		10	10			
전기운영(전기)		1	1			
8급 소개		349	238	2	28	81
행정		192	122	2	5	63
세무		25	25			
사회복지		29	11			18
전산		6	6			
방호		2	2			
공업(기계4, 전기5, 화공1)		10	10			
복지		5	5			
보건		4				4
의료기술		5				5
간호		14				14
환경		1	1			
시설(토목18, 건축10, 지적7, 교통시설1)		36	36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3	3			
시설관리		2	2			
운전		10	10			
전기운영(전기)		3	3			
기계운영(기계)						
사무운영(위드1)		1	1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9급 소개		193	96	5	12	80
행정		54	23	2	2	27
세무		14	14			
사회복지		34	5			29
전산		1			1	
방호		6	5	1		
공업(기계5, 전기9)		14	14			
녹지		3	3			
보건		2			2	
의료기술		2			2	
환경		1	1			
식품위생		1			1	
시설(토목6, 건축3, 지적3)		12	12			
방송통신		1	1			
시설관리		1	1			
위생		4	4			
운전		29	9	2	3	15
전기운영(전기)		2	2			
기계운영(기계)		3	2			1
사무운영(워드)		9			1	8
전문경력관 소개		2	2			
나군(비상대비·민방위 요원)		1	1			
다군(비상대비·민방위 요원)		1	1			
별정직 계		7	3	4		
5급상당 소개		3	1	2		
비서		1	1			
전문위원		2		2		
6급상당 소개		1	1			
비서		1	1			
7급상당 소개		3	1	2		
비서		3	1	2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규정 (제2조관련)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규정 (제2조관련)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총 계		1,250	812	25	116	297	총 계		1,250	812	25	116	297
정무직 계		1	1				정무직 계		1	1			
구 청 장		1	1				구 청 장		1	1			
일반직 계		1,242	808	21	116	297	일반직 계		1,242	808	21	116	297
3급 소개		1	1				3급 소개		1	1			
행정		1	1				행정		1	1			
4급 소개		6	5		1		4급 소개		6	5		1	
서기관		3	3				서기관		3	3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2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2			
기술서기관(보건·의무)		1			1		기술서기관(보건·의무)		1			1	
5급 소개		59	30	1	13	15	5급 소개		59	30	1	13	15
행정		36	21	1		14	행정		36	21	1		14
시설(토목1, 건축1, 지적1)		3	3				시설(토목1, 건축1, 지적1)		3	3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녹지		1	1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2			2		행정·보건		2			2	
행정·시설		4	4				행정·시설		4	4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보건·간호		1			1	
의무·약무		1			1		의무·약무		1			1	
보건·의료기술·의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의무·간호		1			1	
의무		8			8		의무		8			8	
6급 소개		243	165	3	24	51	6급 소개		249	171	3	24	51
행정		153	97	3	9	44	행정		154	98	3	9	44
세무		15	15				세무		17	17			
사회복지		9	5			4	사회복지		9	5			4
전산		1	1				전산		1	1			
방호		1	1				방호		1	1			
공업(기계2, 전기2, 화공1)		5	5				공업(기계2, 전기2, 화공1)		5	5			
보건		1			1		보건		1			1	
녹지		3	3				녹지		4	4			
의료기술		1			1		의료기술		1			1	
약무		2			2		약무		2			2	
간호		6			6		간호		6			6	
환경		1	1				환경		2	2			
시설(토목8, 건축6, 지적3, 디자인1, 도시계획2)		20	20				시설(토목8, 건축6, 지적4, 디자인1, 도시계획2)		21	21			
시설(토목·건축)		1	1				시설(토목·건축)		1	1			
행정·세무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행정·보건		3	1		2		행정·보건		3	1		2	
행정·시설(행정4, 토목1, 건축1)		6	6				행정·시설(행정4, 토목1, 건축1)		6	6			
보건·의료기술		1			1		보건·의료기술		1			1	
공업(화공)·보건·환경		1	1				공업(화공)·보건·환경		1	1			
보건진료		2			2		보건진료		2			2	
운전		5	5				운전		5	5			

현행						개정안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7급 소계		378	260	10	38	70	7급 소계		383	265	10	38	70
행정		218	141	6	10	61	행정		218	141	6	10	61
세무		21	21				세무		26	26			
사회복지		19	9		1	9	사회복지		19	9		1	9
전산		3	3				전산		3	3			
속기		3		3			속기		3		3		
방호		6	6				방호		6	6			
공업(기계6, 전기6, 화공3)		14	13	1			공업(기계6, 전기6, 화공3)		14	13	1		
녹지		3	3				녹지		3	3			
수익		1	1				수익		1	1			
보건		8	3		5		보건		8	3		5	
식품위생		1			1		식품위생		1			1	
의료기술		5			5		의료기술		5			5	
환경		1	1				환경		1	1			
약무		2			2		약무		2			2	
간호		14			14		간호		14			14	
시설(토목15, 건축12, 지적6, 디자인1, 시계획2, 교통시설2)		38	38				시설(토목15, 건축12, 지적6, 디자인1, 시계획2, 교통시설2)		38	38			
방재안전		1	1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2	2				방송통신		2	2			
위생		3	3				위생		3	3			
시설관리		4	4				시설관리		4	4			
운전		10	10				운전		10	10			
전기운영(전기)		1	1				전기운영(전기)		1	1			
8급 소계		358	247	2	28	81	8급 소계		349	238	2	28	81
행정		191	121	2	5	63	행정		192	122	2	5	63
세무		32	32				세무		25	25			
사회복지		29	11			18	사회복지		29	11			18
전산		6	6				전산		6	6			
방호		2	2				방호		2	2			
공업(기계4, 전기5, 화공1)		10	10				공업(기계4, 전기5, 화공1)		10	10			
녹지		6	6				녹지		5	5			
보건		4			4		보건		4			4	
의료기술		5			5		의료기술		5			5	
간호		14			14		간호		14			14	
환경		2	2				환경		1	1			
시설(토목18, 건축10, 지적7, 교통시설2)		37	37				시설(토목18, 건축10, 지적7, 교통시설1)		36	36			
방재안전		1	1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3	3				방송통신		3	3			
시설관리		1	1				시설관리		2	2			
운전		10	10				운전		10	10			
전기운영(전기)		3	3				전기운영(전기)		3	3			
기계운영(기계)		1	1				기계운영(기계)						
사무운영(워드1)		1	1				사무운영(워드1)		1	1			

현행						개정안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9급 소계		195	98	5	12	80	9급 소계		193	96	5	12	80
행정		54	23	2	2	27	행정		54	23	2	2	27
세무		14	14				세무		14	14			
사회복지		34	5			29	사회복지		34	5			29
전산		1			1		전산		1			1	
방호		6	5	1			방호		6	5	1		
공업(기계5, 전기9)		14	14				공업(기계5, 전기9)		14	14			
녹지		3	3				녹지		3	3			
보건		2			2		보건		2			2	
의료기술		2			2		의료기술		2			2	
환경		1	1				환경		1	1			
식품위생		1			1		식품위생		1			1	
시설(토목6, 건축3, 지적4)		13	13				시설(토목6, 건축3, 지적3)		12	12			
방송통신		1	1				방송통신		1	1			
시설관리		1	1				시설관리		1	1			
위생		4	4				위생		4	4			
운전		30	10	2	3	15	운전		29	9	2	3	15
전기운영(전기)		2	2				전기운영(전기)		2	2			
기계운영(기계)		3	2			1	기계운영(기계)		3	2			1
사무운영(워드)		9			1	8	사무운영(워드)		9			1	8
전문경력관 소계		2	2				전문경력관 소계		2	2			
나근(비상대비·민방위 요원)		1	1				나근(비상대비·민방위 요원)		1	1			
다근(비상대비·민방위 요원)		1	1				다근(비상대비·민방위 요원)		1	1			
별정직 계		7	3	4			별정직 계		7	3	4		
5급상당 소계		3	1	2			5급상당 소계		3	1	2		
비서		1	1				비서		1	1			
전문위원		2			2		전문위원		2			2	
6급상당 소계		1	1				6급상당 소계		1	1			
비서		1	1				비서		1	1			
7급상당 소계		3	1	2			7급상당 소계		3	1	2		
비서		3	1	2			비서		3	1	2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신규 행정수요 대응인력 확보를 위한 직급별 기능인력 조정 등을 위해 해당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탄력적 인력운용을 위한 행정직 증원, 기능감소 직군 정원 조정
 - 운전9급 1명 → 행정6급 1명
 - 임기제 시설(교통)8급 1명 → 행정8급 1명
 - 기계운영8급 1명 → 시설관리8급 1명
- 세무직·기술직 6급 정현원 불일치 인원 및 팀장 보직수 반영 정원조정
 - 세무8급 7명 → 세무6급 2명, 세무7급 5명
 - 녹지8급 1명 → 녹지6급 1명
 - 환경8급 1명 → 환경6급 1명
 - 지적9급 1명 → 지적6급 1명